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

2. 시행일: 2025.06.23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		<p>- 연소득 7.5천만원 초과 :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 자금대출 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와 은행 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. 단,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*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</p> <p>* 소득구간별 하한금리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연 소득</td><td>하한금리</td></tr> <tr> <td>13억원 이하</td><td>(생 략)</td></tr> <tr> <td>13억원 초과</td><td>기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</td></tr> </table> <p>(생 략)</p>	연 소득	하한금리	13억원 이하	(생 략)	13억원 초과	기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
연 소득	하한금리							
13억원 이하	(생 략)							
13억원 초과	기 적용 특례금리에 0.2%p 가산한 금리							
고정금리	수익공유형 (신혼희망타운 전용 상품 포함)	(생 략)						
	손익공유형	(생 략)						
	기타	(생 략)						
	10년 고정 후 변동금리	(생 략)						
<p>※ 구입자금(공유형모기지 제외)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5% 이하인 경우 연 1.5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(단,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)</p> <p>※ 전세자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연 1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※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.</p> <p>※ 고정금리 선택 시 0.3%p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선택 시 0.2%p, 5년주기 변동금리 선택 시 0.1%p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</p> <p>※ 금리적용 방식에 따른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, 고정금리 적용 종료 후 변동금리 전환 시에도 가산금리 부과는 유지됩니다.</p>								

구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타금리 적용기준	(생 락)	(생 락)

구분	구입자금	전세자금
기타금리 적용기준	(생 략)	(생 략)

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통지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

1. ~ 9.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10조 기한연장

① (생 략)

② 전세자금(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)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
(대환 포함),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)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하기로 하되 10% 상환이 불가한 경우 0.2%<후단 신설>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 또한 기한연장시마다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.3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
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

①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제출한 자료가 향후 정부 전산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사실

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기한연장 및 목적물 변경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(단, 간접 임대차계약기간 또는

허위 서류 제출
등으로 인한
기한의 이익 상실
안내

갱신 계약기간
또는 대출기간 1년
이하인 경우
기한연장시 01%
가산금리 부과

③ ~ ⑧ (생 략)

<신 설>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대출목적물 변경 즉시 은행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,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합니다. 또한,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

목적물 변경 신고
의무화

- 고객 고지 사항 -

1. (생 략)

2.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제13조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

3. (생 략)

본인	(인)	자필확인	
----	-----	------	--

- 고객 고지 사항 -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, 제13조,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며,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·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

하위 서류 제출 등
으로 인한 기한의
이익 상실 안내

3. (현행과 같음)

본인	(인)	자필확인	
----	-----	------	--